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03

발의연월일: 2020. 11. 20.

발 의 자:이병훈·조오섭·민형배

이상헌 · 송갑석 · 맹성규

임오경 · 신정훈 · 강득구

서영교 · 홍성국 · 주철현

박영순 • 박범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국외소재 중요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 오는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 궁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제5조(기금의 용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